

2015년도

2014년 폐슬레이트처리사업 천일염(해주,창고)
석면해체제거(상태동리 420-13)

석면 비산 농도 측정 결과 보고서

2015. 02

- 측정기관 :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터
- 의뢰업체 : 그린건설 주식회사

목 차

I.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1

II. 별 첨 2

[별 첨 1]. 석면 정량 분석 결과서

[별 첨 2]. 현장소재지 및 측정 장소(공사구역)

[별 첨 3]. 법적 측정 근거

I.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 제출인 | 상호(대표자) 그린건설 주식회사 (한광덕) 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북성산로 162-9 | | |
| 건축물 | 건물명 해주 연면적(m^2) $553.00 m^2$ (해당공사구역실측면적) 석면건축자재[길이(m) · 면적(m^2) · 부피(m^3)] 슬레이트 $846.00 m^2$ | | |
| 측정기관 | 대표자 심운택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사)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터 | | |
| 측정 일시 | 2015.02.03 ~2015.02.03 (1일간) | | |
| | 시료번호 | 측정 지점 | 측정 결과(f/cc) |
| 측정 결과 | 별첨1 | | |

측정 지점 위치(도식도)

별첨2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2015년 02월 05일

제출인

한광덕 (서명)



전라남도 신안군청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수수료
없음

II. 별첨

[별첨 1]. 석면 정량 분석 결과서

시료(석면) 정량 분석 결과서

(Asbestos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의뢰업체 : 그린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 한광덕
Chain of Custody 공사명 : 2014년 폐슬레이트처리사업 천일염(해주,창고) 석면해체제거(상태동리
채취장소 :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420-13 해당 공사구역
측정일 : 2015.02.03
의뢰일 : 2015.02.05

Lab Information 분석기관 :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터
주소/연락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534번지 / 전화 062)956-9013 / fax 062)956-9018

고형시료(석면) 정성(定性) 분석 결과

| 측정일 | 시료 No. | 측정지점 | 총유량(l) | 측정 결과 [f/cc] (기준 0.01) | 초과여부 |
|--------|--------|--------|--------|------------------------------|------|
| 02월03일 | #1 | 부지경계선1 | 2400l | 검출한계 0.0010이하 | 미만 |
| 02월03일 | #2 | 부지경계선2 | 2400l | 0.00153 | 미만 |
| 02월03일 | #3 | 부지경계선3 | 2400l | 검출한계 0.0010이하 | 미만 |
| 02월03일 | #4 | 부지경계선4 | 2400l | 검출한계 0.0010이하 | 미만 |
| 02월03일 | #5 | 위생설비 | 400l | 0.00612 | 미만 |
| 02월03일 | #6 | 실외 | 1200l | 검출한계 0.0020이하 | 미만 |
| 02월03일 | #7 | 폐기물반출구 | 400l | 검출한계 0.0050이하 | 미만 |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터소장



[별 첨 2-1]. 현장 소재지 및 측정장소(공사구역)

|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420-13 해당 공사구역 – 2015.02.03 | | | |
|-----------------------------------------------|-------------------------------------------------------------------------------------|----------------|--------------|
| 공사구역 |  | | |
| 석면 물질 면적 | 슬레이트 – 846.00m ² | | 성상/형태 |
| 측정 지점 | 부지경계선 | #1~#4 (4point) | 지붕재/ 슬레이트 |
| | 위생설비 | #5 (1point) | |
| | 실외 | #6 (1point) | |
| | 폐기물반출구 | #7 (1point) | |
| | 총 계 | 7 POINT | |

[별 첨 2-2]. 현장 소재지 및 측정장소(첨부사진)

| 2014년 폐슬레이트처리사업 천일영(해주,창고) 석면해체제거(상태동리 420-13) | | | |
|------------------------------------------------|--|-----------------|---------|
| 부지 경계선 #1 | | 부지 경계선 #2 | |
| 부지 경계선 #3 | | 부지 경계선 #4 | |
| 위생 설비 #5 | | 실외 #6 | |
| 폐기물 반출구 #7 | | | 이 하 여 백 |

[별 첨 3]. 법적 측정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0613호>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 · 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첨: 측정하지 아니한 자/ 500만 원이하 과태료>

<별첨: 측정결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이하과태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52호>

제38조(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측정 시기: 석면해체 · 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②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료채취 시기

제3조(시료채취 시기)

① 석면 해체 · 제거 관련 작업의 시료채취 시기는 개별 석면 해체 · 제거 작업장과 재개발 · 재건축 · 재정비촉진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시료채취 지점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③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 · 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 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2. 석면 해체 · 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 · 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약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제3장 시료채취 지점선정

제4조(시료채취 지점 선정 기준)

① 시료채취지점은 측정대상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을 측정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며, 작업장에서 공기가 유입·유출되는 곳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을 별표1과 같다.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별표 1]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 구분 | 지점 | | 지점수 | 시료측정위치 | 비고 |
|------|---------|----|-----------|-----------------------------------|--------------------------------------------------------------------------------------------------------------------------------|
| 작업 중 | 부지경계선 |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 |
| | 위생설비 입구 | | 전수(1개 이상) |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 |
| | 작업장 주변 | 실내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 | | 실외 | 1개 이상 |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
| | 음압기 | | 전수(1개 이상) |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
| | 폐기물 반출구 | | 전수(1개 이상) |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

[별표 2]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

| 구분 | 지점 | | 지점수 | 시료측정위치 | 비고 |
|----------|----------|--------|---------------------------------------------|-------------------------------------|------------------------------------------------------------------------|
| 작업 중 | 부지경계선 |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
| | 위생설비 입구 | | 전수(1개 이상) |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 |
| | 작업장 주변 | 실내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 | | 실외 | 1개 이상 |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
| | 음압기 | | 전수(1개 이상) |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
| | 폐기물 보관지점 | | 전수(2개 이상) |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
| | 폐기물 반출구 | | 전수(1개 이상) |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 거주자 주거지역 | | 2개소 이상 |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3m, 높이 1.2-1.5m | -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 |